「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」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O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9년 3월 19일, 평창군수 제출

O 회부일자 : 2019년 3월 25일 회부

O 상정일자: 제245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
(2019년 3월 25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: 교육체육과장)

가. 제안이유

관내 중·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의 교육복지 향상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교복비 지원 근거 마련_(안 제3조)
- 지원대상을 군 소재 중·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학생으로 정함_(안 제4조)
- O 지원금액과 지원횟수를 정함_(안 제5조)
- 교육경비로 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되,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 가능 등 지원방법과 제외 근거 마련 (안 제6조)
- O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교복비에 대한 반납 근거 마련_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관내 중·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의 교육복지 향상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.
- 중·고등학생 교복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강원도 전면 시행예정으로,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 근거인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지원대상과 금액,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으로,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-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1부.

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학생 교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 - 1. "학교"란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중·고등학교를 말한다.
 - 2. "학생"이란 평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군 소재 중·고 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.
 - 3. "교복"이란 중·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복장을 말한다.
 - 4. "교복비"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.
- 제3조(지원)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4조(지원대상)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 소재 중·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학생으로 한다.
- 제5조(지원금액) 군수는 매년 교복비 지원 금액을 정하고, 지원대상 학생의 입학 및 전입시 각 1회 지원한다.
- 제6조(지원방법) ① 군수는 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교육장에 게 일괄 보조 지원하되,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보조지 원 할 수 있다.
 -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.
 - 1.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
 - 2.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경우
 - 3.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 받고 있는 경우
 - ③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절차는 「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7조(반납) 교육장 및 해당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- 1. 제4조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교복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
- 2.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
-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 된 경우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